

<별첨 1> 주요국의 자연재해관련 보험제도 현황

구분	미국(홍수)	미국(지진)
운영 형태	- 국가통제(NFIP)(1968년) - 인가대리점 및 민간보험사에 의한 보험계약체결 및 손해사정 (WYO, 모든 증권의 95%)	- 주정부 통제(CEA)(1966년) - CEA에 의한 지진보험제도 운영 - 지진전문보험회사에 의한 담보 제공 - FAIR PLAN 운영
관련 법률	- 1968 국가홍수보험법	- 1996 캘리포니아보험법 (sec.10089.5~sec.10089.54)
담보 형태	- 홍수손해 임의담보 - SFHA 저당권자에 대한 의무담보	- 지진손해 임의담보
상품 형태	- 별도의 홍수보험 운영	- 가정종합보험의 특약으로 운영
요율	- 국가에서 결정 - 보험회사는 수수료를 받음 - 단독주택 0.25%	- 0.11%~0.525%의 지역별 요율산출 - 0.015%~0.38%의 FAIR PLAN 추가담보요율
보상 한도	- 개인 건물 25만불 - 상업 건물 50만불 (재설치 및 건물변경비용 포함)	- 주택 25,000불 - 동산 5,000불(증액가능) - 손해사정비용담보
공제 금액	- 주택물건 500불	- 임의선택 가능 - FAIR PLAN 손해액의 15%
재보험	- 재보험은 없고 정부보증	- CEA를 통한 정부의 재보험담보 제공 (총보상한도액 기준)
특징	- 역선택위험이 높아 높은 보험요율 수준 유지 - 보험요율산정시 지역별 위험도평가 (hazard zonation)에 의한 구분 - 연방정부가 무한보증	- 가정종합보험에 부대하는 의무담보로 역선택위험 감소 - 정부가 CEA를 통한 재보험담보 제공

구분	프랑스	스위스	일본(지진)
운영 형태	- CatNat프로그램운영 - 국가규제 - 보험회사 원보험인수 및 CCR에 재보험(무한보증)	- 국영보험 및 민영보험 공존 - 민영보험 Pool은 9개 주를 대상으로 운영 - 2/3의 건물이 국영보험에 가입	- 국가통제(1966년) - 가계성지진보험제도 - 보험회사가 인수하여 JER에 재보험, JER이 다시 손보사 및 정부에 재재보험
관련 법률	- 자연재해손실보상에 관한 법(1982년)	- 자연재해법(1990년)	- 지진보험에관한법률 - 지진재보험특별회계법
담보 위험	- 대부분의 자연재해위험	- 대부분의 자연재해위험 (지진위험 추가 검토중)	- 지진위험
상품 형태	- 화재보험의 의무특약으로 운영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부대)	- 화재보험의 의무특약으로 운영	- 가계성화재보험의 자동 부대특약으로 운영 (거부의사 없는 한 부대)
요율	- 국가에서 결정 (화재보험료의 12%)	- 민영보험 Pool에서 결정 (건물 0.045%, 동산 0.03%)	- 손보요율산출기구 결정 (목조 0.120%~0.355%, 비목조 0.05%~0.175%)
보상 한도	- CatNat에 의한 복구의 전제로서 정부의 재해선포 필요 - 보험가액한도로 보상	- 건물 3만 스위스프랑 - 민영보험회사에 의한 임의 추가담보 가능	- 1사고당 4조5천억엔 - 건물 5000만엔 - 가재 1000만엔 - 총보상한도액제 운영
공제 금액	- 주택물건 250유로	- 주택물건 200/400 스위스프랑	없음
재 보험	- CCR을 통한 정부의 무한보증 제공	- 공영보험은 정부보증 - 민영보험은 Pool 운영	- 정부, 지진재보험회사, 보험회사가 위험분산 - 참여기관별 책임한도액을 사전에 확정 - 정부는 특별회계에 의한 재보험기금운영
특징	- 화재보험 의무특약으로 운영함으로써 역선택 위험 감소 - 정부가 CCR을 통하여 무한보증 제공 - 평형준비금제도 운영	- 화재보험 의무특약으로 운영함으로써 역선택 위험 감소 - Pool을 통한 위험분산 - 민영보험 및 공영보험 공존	- 화재보험에 자동부대담보로 역선택위험 감소 - 정부가 JER과 계약관계에 의하여 재보험담보 제공

<별첨 2> 주요국의 농작물재해보험제도 현황

구 분	미국	일본	스페인
근거법률	농작물보험법 Crop Insurance Act	농업재해보상법	복합농업보험법 Ley de Seguros Agrarios Combinados
사업년도	1938년	1949년	1954년
가입방식	임의가입	수도작·잠전(의무) 과수 등기타(임의)	임의가입
원보험주체	민영보험사	공제조합	민영보험사(폴구성)
보험목적물	밀·콩·보리등 (100여종)	농작물,잠전,가축 등 (40여종)	농작물(30여종)
보험료 규모	34억불(2003년기준)	1,444억엔(2002년기준)	3.45억불(2002년기준)
대상재해	자연재해	자연재해	자연재해
재정지원	위험보험료 55~67% 운영비 100%	위험보험료 50% 운영비 약500여억엔 (연간)정액지급	총보험료의 53%
담보수준	수확량의 50~80%	수확량의 70~80%	수확량의 65%
손해율	108.7%('98~'02)	52.7%('00)	97.2%('02)
재보험방식	비례/비비례혼합방식	비례방식	비비례방식
재보험운영기구	정부(FCIC)	정부(농림수산성)	정부(CCS)
재보험재원조달방식	기금	특별회계	전문재보험기구
가입률	72.7%('00년 기준)	수도작 90.3% 과수등기타25% ('01년 기준)	30%

<별첨 3> 농작물재해보험의 작물 확대계획에 따른 보험료 규모 추정자료

(단위 : 톤(t), 천원)

품목	생산량(t)	t당가격	생산액	가입금액	추정순보험료
기시행품목					32,996,000
수도작	4,415,522	1,967	8,685,331,774	2,692,452,850	107,967,359
토마토	264,121	656	173,333,808	53,733,481	2,154,713
딸기	200,805	1,291	259,138,853	80,333,044	3,221,355
수박	637,498	423	269,342,905	83,496,301	3,348,202
인삼			578,366,000	179,293,460	7,189,668
참외	231,912	902	209,153,702	64,837,648	2,599,990
오이	395,123	688	271,726,087	84,235,087	3,377,827
호박	135,935	645	87,650,888	27,171,775	1,089,588
무	219,869	240	52,768,560	16,358,254	655,966
배추	219,017	431	94,396,327	29,262,861	1,173,441
풋고추	218,164	2,493	543,817,403	168,583,395	6,760,194
메론	31,027	1,630	50,561,599	15,674,096	628,531
고추	132,010	6,185	816,481,850	253,109,374	10,149,686
맥류	168,317	787	132,507,558	41,077,343	1,647,201
난류			104,463,000	32,383,530	1,298,580
장미			163,228,000	50,600,680	2,029,087
마늘	378,846	2,204	834,976,584	258,842,741	10,379,594
양파	745,203	667	496,739,900	153,989,369	6,174,974
감자	498,401	540	268,928,873	83,367,951	3,343,055
느타리			293,334,966	90,933,839	3,646,447
합계			14,386,248,637	4,459,737,078	211,831,457

- 주) 1. 추정순보험료는 품목별 생산액에 가입률(31.0%), 순보험요율(4.01%)를 곱하여 단순추정함
2. 생산액 = 2003년 작물별 생산량 × 2003년 톤당 농가판매가격
3. 가입률은 농작물재해보험 기시행중인 6개 과수의 2003년 생산액 대비 2004년 가입금액의 비율인 31.0%를 준용함
4. 순보험요율은 사과 2004년 시군별 요율의 산술평균값인 4.01%를 준용함
5. 인삼, 난류, 장미, 느타리의 생산액은 농림부의 경상가격기준 농림업생산액 통계 이용
6. 농림부의 세부확대계획(안)에도 제시되지 않은 작물 4가지는 제외하고 추정하였음

CEO Report 2004-11

손보사의 자연재해보험시장 참여전략

발행일	2004년 9월 일
발행인	김 창 수
편집인	이 득 주
발행처	보험개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인쇄소	(주)OOO 대표전화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손해보험본부
화재해상보험팀(☎368-4191)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